

2024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 시장 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2024. 01. 01.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제4항,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7조제3항에 의하여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 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 ①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 ② 균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 ③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과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 ④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 ⑤ 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율
야산지	25%
변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 지세구분 내역표

구분 \ 지구		평탄지	야산지	산악지
지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기준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유) 완만 양호	대로(무) 완급 불편	대소로(무) 극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호 소수 또는 소목 보통	불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편	불량 울창 불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리 " " "	차도에서 1km이내 불편 " " "	차도에서 1km이상 극히 불편 불가 "

⑥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높이	할증율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10m	20%증
	10~15m	30%증
	15~20m	40%증
	20~30m	50%증
	30~40m	60%증
	40~50m	70%증
	50~60m	80%증
	60m이상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비계틀 사용	10m이상	10%증
	20m이상	20%증
	30m이상	30%증
	50m이상	40%증
	70m이상	매 20m 증가마다 10%씩 증

⑦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5)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 항만 및 어항공사.....	1
------------------	---

【공통 적용사항】

- ① 이 단가(단위: 원)는 항만 및 어항공사에 적용한다.
- ② 규격에 수록된 장비는 본 단가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이며, 현장여건 및 장비의 작업능력, 작업반경 등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OA02* 배송관 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A020.62000	배송관부설및철거 (육상관)	D760mm×6m (플랜지접합) (크레인(트럭)15톤)	SET	115,858	72%
OA020.42000	배송관부설및철거 (해상관)	D760mm×6m (고무슬리브접합) (크레인(트럭)15톤)	SET	169,849	73%
OA020.52000	배송관부설및철거 (침설관)	D760mm×6m (고무슬리브접합) (크레인(트럭)15톤)	SET	144,558	7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배송관의 부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육상관은 “배송관 2분(플랜지접합)”을 1set로 구성하여 배송관 접합 및 철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③ 해상관은 “배송관 1분+고무슬리브 1분+배송관 띄우개 1분”을 1set로 구성하여 배송관 접합 및 철거,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 및 철거, 배송관 진수 및 철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④ 침설관은 “배송관 2분+고무슬리브 1분”을 1set로 구성하여 배송관 접합 및 철거와 배송관 진수 및 철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⑤ 배송관의 제작 및 현장까지의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B*** 사석 선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003.11000	사석선별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2,550	4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사석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각종 규격은 규격석(0.015~0.03m³급), 준규격석(0.001~0.03m³급) 및 비규격석(0.03m³급이하)을 의미한다. 단, 피복석은 제외한다.

■ OB0** 사석 덩프 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002.11000	사석덩프적재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2,956	4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사석을 덩프트럭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각종 규격은 규격석(0.015~0.03m³급), 준규격석(0.001~0.03m³급) 및 비규격석(0.03m³급이하)을 의미한다. 단, 피복석은 제외한다.

■ OB0** 사석 투하 또는 제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010.11000	사석투하(육상수상)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3,151	46%
OB020.10000	사석투하(육상수중)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잠수조)	m ³	8,175	75%
OB020.11000	사석투하(육상수중:망태)	각종 (크레인 25톤, 잠수조)	m ³	17,450	79%
OB030.11000	사석투하(해상수상)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5,560	69%
OB030.21000	사석투하(해상수상)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2.0m ³))	m ³	5,876	61%
OB040.11000	사석투하(해상수중)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잠수조)	m ³	10,810	80%
OB040.21000	사석투하(해상수중)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2.0m ³ , 잠수조)	m ³	10,888	7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공사현장에 도착한 사석을 수상 또는 수중 투하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각종 규격은 규격석(0.015~0.03m³급), 준규격석(0.001~0.03m³급) 및 비규격석(0.03m³급이하)을 의미한다. 단, 피복석은 제외한다.
- ③ 사석투하(육상수중:망태) 공종은 망태기 제작 및 담기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④ 해상투하에서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사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단가보정】

- ① 사석 제거 단가는 투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B00* 사석정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001.11000	사석정리	각종 (불도저 19톤)	m ³	669	41%
OB001.21000	사석정리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1,508	4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으로 투하된 사석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각종 규격은 규격석(0.015~0.03m³급), 준규격석(0.001~0.03m³급) 및 비규격석(0.03m³급이하)을 의미한다. 단, 피복석은 제외한다.

■ OB*** 피복석 선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03.11000	피복석선별	0.1~0.4m ³ (크레인 10톤)	m ³	7,718	8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피복석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B30* 피복석 덤프 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00.11000	피복석덤프적재	0.1~0.4m ³ (크레인 10톤)	m ³	8,682	87%
OB300.21000	피복석덤프적재	0.5 ~ 0.7m ³ (크레인 10톤)	m ³	9,276	87%
OB300.31000	피복석덤프적재	0.8 ~ 1.0m ³ (크레인 10톤)	m ³	9,680	8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피복석을 덤프트럭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B30* 피복석 대선 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01.22000	피복석대선적재	0.1 ~ 0.4m ³ (크레인 10톤)	m ³	6,336	82%
OB301.31000	피복석대선적재	0.5 ~ 0.7m ³ (크레인 10톤)	m ³	6,560	82%
OB301.41000	피복석대선적재	0.8 ~ 1.0m ³ (크레인 10톤)	m ³	6,609	8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피복석을 대선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B32* 피복석 투하 또는 제거(육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20.01000	피복석투하(육상수상)	0.1 ~ 0.4m ³ (크레인 10톤)	m ³	8,109	85%
OB320.02000	피복석투하(육상수상)	0.1 ~ 0.4m ³ (크레인 25톤)	m ³	9,765	75%
OB320.03000	피복석투하(육상수상)	0.5 ~ 0.7m ³ (크레인 10톤)	m ³	8,234	85%
OB320.04000	피복석투하(육상수상)	0.8 ~ 1.0m ³ (크레인 10톤)	m ³	8,320	85%
OB320.12000	피복석투하(육상수중)	0.1 ~ 0.4m ³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³	14,495	88%
OB320.11000	피복석투하(육상수중)	0.1 ~ 0.4m ³ (크레인 25톤, 잠수조)	m ³	16,253	82%
OB320.21000	피복석투하(육상수중)	0.5 ~ 0.7m ³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³	14,622	88%
OB320.32000	피복석투하(육상수중)	0.8 ~ 1.0m ³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³	14,816	87%
OB320.31000	피복석투하(육상수중)	0.8 ~ 1.0m ³ (크레인 25톤, 잠수조)	m ³	16,957	8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현장에 도착한 피복석을 육상에서 수상 또는 수중으로 투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② 피복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단가보정】

- ① 피복석 제거(육상) 단가는 투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B3** 피복석 투하 또는 제거(해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30.1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상)	0.1 ~ 0.4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m ³	13,495	88%
OB330.2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상)	0.5 ~ 0.7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m ³	13,703	88%
OB330.3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상)	0.8 ~ 1.0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m ³	14,047	88%
OB340.1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중)	0.1 ~ 0.4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³	17,823	89%
OB340.2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중)	0.5 ~ 0.7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³	19,743	89%
OB340.3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중)	0.8 ~ 1.0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³	20,883	8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피복석을 수상 또는 수중 투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피복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단가보정】

- ① 피복석 제거(해상) 단가는 투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B*** 필터사석 덤프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401.11000	필터사석덤프적재	D=100mm 이하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1,294	4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필터사석을 덤프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B4** 필터사석 투하(육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410.11000	필터사석투하(육상수상)	D=100mm 이하 (굴삭기(무한궤도 1.0m³))	m³	1,478	49%
OB420.11000	필터사석투하(육상수중)	D=100mm 이하 (굴삭기(무한궤도 1.0m³), 잠수조)	m³	6,621	8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필터사석을 수상 또는 수중에 투하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필터사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B4** 필터사석 투하(해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430.11000	필터사석투하(해상수상)	D=100mm 이하 (굴삭기(무한궤도 1.0m³))	m³	4,156	79%
OB440.11000	필터사석투하(해상수중)	D=100mm 이하 (굴삭기(무한궤도 1.0m³), 잠수조)	m³	9,625	8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필터사석을 수상 또는 수중 투하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필터사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C1** 사석기초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110.12000	기초고르기	수상(굴삭기(무한 궤도1.0m³))	m ²	42,750	74%
OC120.11000	기초고르기	수중(H=0~15m 미만) (잠수조)	m ²	106,134	92%
OC120.21000	기초고르기	수중(H=15~20m 미만) (잠수조)	m ²	149,985	92%
OC120.31000	기초고르기	수중(H=20~25m 미만) (잠수조)	m ²	208,280	92%
OC120.41000	기초고르기	수중(H=25~30m 미만) (잠수조)	m ²	244,210	9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콘크리트 블록 및 케이슨 등의 저면을 기초고르기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해상의 기초고르기는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를 별도 계상한다. 다만, 육상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수중고르기의 작업효율(E)은 시공조건이 천후시 조용할 때, 조류가 0~2.8km/hr 일 때, 명암이 보통일 때를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C*** 내부사석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210.12000	내부사석고르기	수상(굴삭기(무한 궤도1.0m ²))	m ²	34,576	74%
OC520.11000	내부사석고르기	수중(H=0~15m 미만) (잠수조)	m ²	48,549	92%
OC520.21000	내부사석고르기	수중(H=15~20m 미만) (잠수조)	m ²	72,080	92%
OC520.31000	내부사석고르기	수중(H=20~25m 미만) (잠수조)	m ²	89,654	92%
OC520.41000	내부사석고르기	수중(H=25~30m 미만) (잠수조)	m ²	105,036	9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내부사석고르기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또한, 이 단가는 방파제 또는 호안 하부 근고블록의 바닥 고르기, 상치 콘크리트 바닥 고르기 등에 적용할 수 있다.
- ② 해상의 내부사석고르기는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를 별도 계상한다. 다만, 육상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수중고르기의 작업효율(E)은 시공조건이 천후시 조용할 때, 조류가 0~2.8km/hr 일 때, 명암이 보통일 때를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④ 내부사석고르기는 내부사석 투하 후 피복석 또는 중간피복석 거치 전에 내부사석의 표면을 소정의 높이로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OC3** 피복석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310.01000	피복석고르기(육상수상)	0.1~1.0m ³ 급 이하, (크레인 10톤)	m ²	31,410	89%
OC310.11000	피복석고르기(육상수중)	0.1~0.5m ³ 급 이하,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²	85,453	85%
OC310.12000	피복석고르기(육상수중)	0.6~1.0m ³ 급 이하, (크레인 25톤, 잠수조)	m ²	91,424	78%
OC330.01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상)	0.1~1.0m ³ 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m ²	37,580	89%
OC340.13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중)	0.1~1.0m ³ 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수중(H=0~15m)	m ²	92,968	85%
OC340.23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중)	0.1~1.0m ³ 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수중(H=15~20m)	m ²	117,867	85%
OC340.33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중)	0.1~1.0m ³ 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수중(H=20~25m)	m ²	163,793	85%
OC340.43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중)	0.1~1.0m ³ 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수중(H=25~30m)	m ²	191,826	8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피복석고르기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해상의 피복석고르기는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③ 수중고르기의 작업효율(E)은 시공조건이 천후시 조용할 때, 조류가 0~2.8km/hr 일 때, 명암이 보통일 때를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C4** 피복석거친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410.11000	피복석거친고르기(육상수상)	0.1~1.0급 m ³ 이하 (크레인 10톤)	m ²	27,891	89%
OC420.12000	피복석거친고르기(육상수중)	0.1~0.5급 이하 (크레인 10톤, 잠수조, 수중(H=0~15m))	m ²	68,369	85%
OC420.13000	피복석거친고르기(육상수중)	0.6~1.0급 이하 (크레인 25톤, 잠수조, 수중(H=0~15m))	m ²	81,449	78%
OC430.11000	피복석거친고르기(해상수상)	0.1~1.0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m ²	35,143	89%
OC420.31000	피복석거친고르기(해상수중)	0.1~1.0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수중(H=0~15m))	m ²	88,727	85%
OC420.43000	피복석거친고르기(해상수중)	0.1~1.0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수중(H=15~20m))	m ²	107,286	85%
OC420.53000	피복석거친고르기(해상수중)	0.1~1.0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수중(H=20~25m))	m ²	149,205	85%
OC420.63000	피복석거친고르기(해상수중)	0.1~1.0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수중(H=25~30m))	m ²	174,911	8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피복석거친고르기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해상의 피복석거친고르기는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를 별도 계상한다.
- ③ 수중고르기의 작업효율(E)은 시공조건이 천후시 조용할 때, 조류가 0~2.8km/hr 일 때, 명암이 보통일 때를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④ 피복석거친고르기는 중간피복석이나 소파블록 하부의 피복석 및 설계 파고(H)의 영향권 밖(연평균해면(M.S.L) 기준, 향내측은 1.0H 보다 아래 부분, 향외측은 2.0H 보다 아래 부분)의 피복석을 피복석고르기에 비해 약간 거칠게 고르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OC7** 필터사석고르기

공중코드	공중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710.12000	필터사석고르기	수상(굴삭기(무한 궤도1.0m ³))	m ²	4,722	63%
OC720.11000	필터사석고르기	수중(H=0~15m 미만) (잠수조)	m ²	20,782	92%
OC720.21000	필터사석고르기	수중(H=15~20m 미만) (잠수조)	m ²	26,280	92%
OC720.31000	필터사석고르기	수중(H=20~25m 미만) (잠수조)	m ²	36,546	92%
OC720.41000	필터사석고르기	수중(H=25~30m 미만) (잠수조)	m ²	42,803	9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필터사석고르기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해상의 필터사석고르기는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를 별도 계상한다. 다만, 육상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수중고르기의 작업효율(E)은 시공조건이 천후시 조용할 때, 조류가 0~2.8km/hr 일 때, 명암이 보통일 때를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유로폼)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00.11101	유로폼	간단, 0~7m	m ²	33,791	88%
OD000.11202	유로폼	보통, 0~7m	m ²	38,841	87%
OD000.11303	유로폼	복잡, 0~7m	m ²	53,177	8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상치콘크리트, 블록 및 케이슨 등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유로폼 패널의 벽체 설치 및 해체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재료비(재료손율, 할증 포함) 및 설치비, 기타 작업중 유지보수(청소, 박리제 바름, 보수)비용을 포함한다.
- ③ 면정리(해체후 연마) 작업비용과 폼타이의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 ④ 간단, 보통, 복잡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간단	블록, 수문 또는 관의 기초, 매트기초 등 간단한 구조
보통	상치콘크리트, 측구, 수로, 옹벽, 일반적인 벽체, 박스 등
복잡	케이슨, 교대, 날개벽 등 복잡하고 보강이 많은 구조

- ⑤ 이 단가는 설치높이 7m이하에 적용하며, 7m초과 시에는 매 3m 증가마다 노무비에 10%를 가산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한 경우 양중장비 사용료를 별도 계상하고, 이 항의 노무비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콘크리트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00.21100	무근콘크리트타설 /펌프차	양호, 70~100m ³ 미만/회	m ³	19,613	72%
OD000.21200	무근콘크리트타설 /펌프차	보통, 70~100m ³ 미만/회	m ³	24,673	72%
OD000.21300	무근콘크리트타설 /펌프차	불량, 70~100m ³ 미만/회	m ³	30,654	71%
OD000.21400	무근콘크리트타설 /펌프차	매우불량, 40~50m ³ 미만/회	m ³	72,523	71%
OD000.31100	철근콘크리트타설 /펌프차	양호, 70~100m ³ 미만/회	m ³	21,835	72%
OD000.31200	철근콘크리트타설 /펌프차	보통, 70~100m ³ 미만/회	m ³	27,831	72%
OD000.31300	철근콘크리트타설 /펌프차	불량, 70~100m ³ 미만/회	m ³	34,924	71%
OD000.31400	철근콘크리트타설 /펌프차	매우불량, 40~50m ³ 미만/회	m ³	84,596	71%
OD000.71000	콘크리트타설	소형구조물	m ³	93,137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블록 및 케이슨, 상치콘크리트 등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펌프차(80m³/hr)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붐타설, 슬럼프 80~120mm)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③ 타설준비 및 마무리, 펌프차 타설(세팅, 마감),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 ④ 레미콘 재료비 및 운반 비용,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및 표면마무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m³ 내외, 기계비빔 10m³ 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⑥ 배관으로 타설해야 할 경우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양호	(소파)블록,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보통	상치콘크리트,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등 일반적인 시설물
불량	케이슨, 줄기초, 슬래브없는 [월거더]구조의 기둥과 보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매우불량	해상작업선을 이용하여 시공되는 구조물, 절/성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 큰 시설물

【단가보정】

① 타설규모 및 슬럼프에 따라 시장단가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분 (1회 타설규모m ²)		무근콘크리트 타설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8~12	15이상	8~12	15이상	8~12	15이상	8~12	15이상
표준 시장단가	30미만	1.83	1.81	1.67	1.64	1.54	1.51	1.11	1.07
	30~40미만	1.65	1.62	1.52	1.49	1.42	1.39	1.06	1.03
	40~50미만	1.40	1.38	1.32	1.30	1.26	1.23	1.00	0.97
	50~70미만	1.19	1.16	1.15	1.12	1.12	1.09	0.95	0.91
	70~100미만	1.00	0.98	1.00	0.97	1.00	0.97	-	
	100~150미만	0.82	0.80	0.84	0.82	0.86	0.83		
	150~200미만	0.73	0.71	0.77	0.75	0.80	0.77		
200초과	0.67	0.65	0.71	0.69	0.74	0.71			

구분 (1회 타설규모m ²)		철근콘크리트 타설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8~12	15이상	8~12	15이상	8~12	15이상	8~12	15이상
표준 시장단가	30미만	1.76	1.71	1.60	1.55	1.49	1.43	1.10	1.04
	30~40미만	1.59	1.55	1.47	1.42	1.38	1.32	1.06	0.99
	40~50미만	1.37	1.32	1.29	1.24	1.23	1.18	1.00	0.94
	50~70미만	1.17	1.13	1.14	1.09	1.11	1.06	0.95	0.89
	70~100미만	1.00	0.96	1.00	0.95	1.00	0.95	-	
	100~150미만	0.83	0.79	0.85	0.81	0.87	0.82		
	150~200미만	0.75	0.71	0.79	0.74	0.82	0.77		
200초과	0.69	0.65	0.73	0.68	0.75	0.71			

② 타설규모 및 슬럼프에 따라 노무비율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분 (1회 타설규모m ²)		무근콘크리트 타설, 철근콘크리트 타설	
		양호,보통,불량	매우불량
		8~12, 15이상	8~12, 15이상
노무 비율	30미만	0.9	
	30~40미만	0.92	
	40~50미만	0.94	
	50~70미만	0.97	
	70~100미만	1.00	
	100~150미만	1.03	
	150~200미만	1.05	
	200초과	1.07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콘크리트 양생)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00.22000	콘크리트 양생	무근구조물	m ³	4,060	76%
OD000.32000	콘크리트 양생	철근구조물	m ³	1,485	7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블록 및 케이슨, 상치콘크리트 등의 제작을 위해 물을 뿌려 양생하는 정도의 일반양생에 소요되는 제잡비(양생재료, 기구손료)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특수양생의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00.41000	철근가공 및 조립	간단	ton	783,736	99%
OD000.51000	철근가공 및 조립	보통	ton	887,995	99%
OD000.81000	철근가공 및 조립	복잡	ton	1,043,994	9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블록 및 케이슨, 상치콘크리트 등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철근의 현장내 소운반, 절단, 가공 및 조립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단, 철근 재료비와 현장까지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이 단가는 철근의 사용고재가 감액되어 있다.
- ④ 수직고 7m 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사용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전체 철근량 0.5톤 미만)에서는 노무비를 30% 까지 가산할 수 있다.
- ⑥ 간단, 보통, 복잡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간단	블록, 수문 또는 관의 기초, 매트기초 등 간단한 구조
보통	상치콘크리트, 측구, 수로, 옹벽, 일반적인 벽체, 박스 등
복잡	케이슨, 교대, 날개벽 등 복잡하고 보강이 많은 구조

【단가보정】

- ① 단일공사에 있어 “철근가공 및 조립”의 전체수량이 10ton 미만일 경우 위 단가의 115%를 적용한다.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비닐 깔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00.61000	비닐깔기	P.E 필름 (t=0.1mm)	m ²	619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블록, 케이슨 등의 제작을 위한 비닐깔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비닐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D40* 블록의 이적 및 적재(육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404.0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5톤 이하 (크레인 10톤)	개	35,741	87%
OD404.1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5톤초과~10톤이하 (크레인 15톤)	개	51,435	83%
OD404.2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10톤초과~15톤이하 (크레인 20톤)	개	68,646	80%
OD404.3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15톤초과~20톤이하 (크레인 25톤)	개	73,254	77%
OD404.4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20톤초과~25톤이하 (크레인 35톤)	개	99,845	69%
OD404.42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25톤초과~30톤이하 (크레인 40톤)	개	101,584	69%
OD404.5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30톤초과~40톤이하 (크레인 50톤)	개	137,264	64%
OD404.6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40톤초과~50톤이하 (크레인 70톤)	개	163,705	60%
OD404.7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50톤초과~55톤이하 (크레인 70톤)	개	183,796	60%
OD404.72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55톤초과~60톤이하 (크레인 80톤)	개	202,931	5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제작된 콘크리트블록 또는 소파블록을 이적 및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블록 및 소파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40* 블록대선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403.01000	블록대선적재	5톤 이하 (크레인 10톤)	개	19,227	87%
OD403.12000	블록대선적재	5톤초과~10톤이하 (크레인 15톤)	개	24,781	82%
OD403.21000	블록대선적재	10톤초과~15톤이하 (크레인 20톤)	개	35,110	79%
OD403.31000	블록대선적재	15톤초과~20톤이하 (크레인 25톤)	개	37,338	77%
OD403.42000	블록대선적재	20톤초과~25톤이하 (크레인 35톤)	개	54,632	70%
OD403.43000	블록대선적재	25톤초과~30톤이하 (크레인 40톤)	개	55,153	69%
OD403.51000	블록대선적재	30톤초과~40톤이하 (크레인 50톤)	개	60,298	64%
OD403.62000	블록대선적재	40톤초과~50톤이하 (크레인 70톤)	개	79,699	61%
OD403.71000	블록대선적재	50톤초과~55톤이하 (크레인 70톤)	개	92,408	60%
OD403.72000	블록대선적재	55톤초과~60톤이하 (크레인 80톤)	개	95,894	55%
OD403.92000	블록대선적재	60톤초과~80톤이하 (크레인 100톤)	개	126,961	51%
OD403.93000	블록대선적재	80톤초과~120톤이하 (크레인 150톤)	개	145,681	4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콘크리트블록 또는 소파블록을 대선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블록 및 소파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40* 블록의 이적 및 적재(해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400.01000	이적및대선적재	5톤 이하 (크레인 10톤)	개	35,847	87%
OD400.11000	이적및대선적재	5톤초과~10톤이하 (크레인 15톤)	개	51,469	83%
OD400.21000	이적및대선적재	10톤초과~15톤이하 (크레인 20톤)	개	68,577	80%
OD400.31000	이적및대선적재	15톤초과~20톤이하 (크레인 25톤)	개	71,913	77%
OD400.41000	이적및대선적재	20톤초과~25톤이하 (크레인 35톤)	개	99,513	69%
OD400.42000	이적및대선적재	25톤초과~30톤이하 (크레인 40톤)	개	101,772	69%
OD400.51000	이적및대선적재	30톤초과~40톤이하 (크레인 50톤)	개	136,292	64%
OD400.61000	이적및대선적재	40톤초과~50톤이하 (크레인 70톤)	개	155,709	60%
OD400.71000	이적및대선적재	50톤초과~55톤이하 (크레인 70톤)	개	163,020	60%
OD400.81000	이적및대선적재	55톤초과~60톤이하 (크레인 80톤)	개	211,094	54%
OD400.91000	이적및대선적재	60톤초과~80톤이하 (크레인 100톤)	개	249,929	51%
OD400.92000	이적및대선적재	80톤초과~120톤이하 (크레인 150톤)	개	291,365	4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제작된 콘크리트블록 또는 소파블록을 이적 및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블록 및 소파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40* 블록의 전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401.21000	블록전치(1회)	5톤 이하 (크레인 10톤)	개	18,195	87%
OD401.31000	블록전치(1회)	5톤초과~10톤이하 (크레인 15톤)	개	26,354	82%
OD401.41000	블록전치(1회)	10톤초과~15톤이하 (크레인 20톤)	개	35,851	79%
OD401.42000	블록전치(1회)	15톤초과~20톤이하 (크레인 25톤)	개	39,169	77%
OD401.61000	블록전치(1회)	20톤초과~25톤이하 (크레인 35톤)	개	53,707	70%
OD401.62000	블록전치(1회)	25톤초과~30톤이하 (크레인 40톤)	개	54,170	69%
OD401.71000	블록전치(1회)	30톤초과~40톤이하 (크레인 50톤)	개	66,586	64%
OD401.81000	블록전치(1회)	40톤초과~50톤이하 (크레인 70톤)	개	81,292	61%
OD401.91000	블록전치(1회)	50톤초과~55톤이하 (크레인 70톤)	개	90,539	60%
OD401.92000	블록전치(1회)	55톤초과~60톤이하 (크레인 80톤)	개	101,992	55%
OD402.11000	블록전치(1회)	60톤초과~80톤이하 (크레인 100톤)	개	124,294	51%
OD402.21000	블록전치(1회)	80톤초과~120톤이하 (크레인 150톤)	개	145,505	4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제작된 콘크리트블록 또는 소파블록을 전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블록 및 소파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01* 콘크리트블록 거치 또는 제거(육상수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13.0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5톤 이하 (크레인 10톤)	개	71,768	87%
OD013.1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5톤초과~10톤이하 (크레인 15톤)	개	83,134	83%
OD013.2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10톤초과~15톤이하 (크레인 20톤)	개	124,210	84%
OD013.3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15톤초과~20톤이하 (크레인 25톤)	개	167,541	82%
OD013.4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20톤초과~25톤이하 (크레인 35톤)	개	308,049	80%
OD013.42000	블록거치(육상수상)	25톤초과~30톤이하 (크레인 40톤)	개	312,958	80%
OD013.5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30톤초과~40톤이하 (크레인 50톤)	개	383,458	76%
OD013.7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40톤초과~55톤이하 (크레인 70톤)	개	407,002	73%
OD013.72000	블록거치(육상수상)	55톤초과~60톤이하 (크레인 80톤)	개	454,573	68%
OD013.8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55톤초과~60톤이하 (크레인 100톤)	개	489,403	65%
OD013.9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60톤초과~80톤이하 (크레인 100톤)	개	489,403	65%
OD013.92000	블록거치(육상수상)	80톤초과~120톤이하 (크레인 150톤)	개	571,791	5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콘크리트 블록을 수상 거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 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단가보정】

- ① 콘크리트블록 제거(육상수상) 단가는 거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D02* 콘크리트블록 거치 또는 제거(육상수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23.0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5톤 이하 (크레인 10톤, 잡수조)	개	113,960	88%
OD023.1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5톤초과~10톤이하 (크레인 15톤, 잡수조)	개	147,277	85%
OD023.2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10톤초과~15톤이하 (크레인 20톤, 잡수조)	개	211,253	85%
OD023.3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15톤초과~20톤이하 (크레인 25톤, 잡수조)	개	252,169	83%
OD023.4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20톤초과~25톤이하 (크레인 35톤, 잡수조)	개	434,070	82%
OD023.42000	블록거치(육상수중)	25톤초과~30톤이하 (크레인 40톤, 잡수조)	개	439,228	81%
OD023.5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30톤초과~40톤이하 (크레인 50톤, 잡수조)	개	499,976	78%
OD023.7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40톤초과~55톤이하 (크레인 70톤, 잡수조)	개	514,351	76%
OD023.72000	블록거치(육상수중)	55톤초과~60톤이하 (크레인 80톤, 잡수조)	개	570,990	72%
OD023.8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55톤초과~60톤이하 (크레인 100톤, 잡수조)	개	593,045	70%
OD023.9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60톤초과~80톤이하 (크레인 100톤, 잡수조)	개	593,045	70%
OD023.92000	블록거치(육상수중)	80톤초과~120톤이하 (크레인 150톤, 잡수조)	개	674,096	6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콘크리트 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 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단가보정】

- ① 콘크리트블록 제거(육상수중) 단가는 거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D0** 콘크리트블록 거치 또는 제거(해상수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33.0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5톤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개	92,967	87%
OD033.1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5톤초과~1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20톤)	개	109,242	81%
OD033.2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10톤초과~15톤이하 (조합기중기선 30톤)	개	196,530	82%
OD033.3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15톤초과~2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40톤)	개	271,943	78%
OD033.4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20톤초과~25톤이하 (조합기중기선 50톤)	개	433,534	79%
OD033.42000	블록거치(해상수상)	25톤초과~3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467,462	76%
OD033.43000	블록거치(해상수상)	30톤초과~35톤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555,997	76%
OD033.52000	블록거치(해상수상)	35톤초과~4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80톤)	개	575,952	72%
OD033.6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40톤초과~5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100톤)	개	673,817	69%
OD033.9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50톤초과~8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150톤)	개	702,249	6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콘크리트 블록을 수상 거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콘크리트 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단가보정】

- ① 콘크리트블록 제거(해상수상) 단가는 거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D0** 콘크리트블록 거치 또는 제거(해상수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43.0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5톤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개	143,488	88%
OD043.0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5톤 이하 (조합기중기선 15톤, 잠수조)	개	151,567	86%
OD043.1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5톤초과~1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20톤, 잠수조)	개	175,645	84%
OD043.2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10톤초과~15톤이하 (조합기중기선 30톤, 잠수조)	개	306,945	83%
OD043.3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15톤초과~2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40톤, 잠수조)	개	373,026	80%
OD043.4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20톤초과~25톤이하 (조합기중기선 50톤, 잠수조)	개	564,370	80%
OD043.4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25톤초과~3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610,027	78%
OD043.43000	블록거치(해상수중)	30톤초과~35톤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739,063	78%
OD043.5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35톤초과~4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80톤, 잠수조)	개	763,271	74%
OD043.6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40톤초과~5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100톤, 잠수조)	개	808,174	72%
OD043.9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50톤초과~8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150톤, 잠수조)	개	906,717	67%
OD043.9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80톤초과~100톤이하 (조합기중기선 200톤, 잠수조)	개	953,431	6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콘크리트 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콘크리트 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단가보정】

- ① 콘크리트블록 제거(해상수중) 단가는 거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D3** 소파블록 제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00.01000	T.T.P 제작	2톤급	개	147,651	94%
OD300.02000	T.T.P 제작	3.2톤급	개	227,286	95%
OD300.03000	T.T.P 제작	4톤급	개	243,873	94%
OD300.04000	T.T.P 제작	5톤급	개	272,129	94%
OD300.05000	T.T.P 제작	6.3톤급	개	360,873	94%
OD300.06000	T.T.P 제작	8톤급	개	437,961	94%
OD300.11000	T.T.P 제작	10톤급	개	519,027	94%
OD300.12000	T.T.P 제작	12.5톤급	개	618,287	94%
OD300.13000	T.T.P 제작	16톤급	개	652,652	94%
OD300.21000	T.T.P 제작	20톤급	개	897,653	93%
OD300.22000	T.T.P 제작	25톤급	개	964,449	93%
OD300.31000	T.T.P 제작	32톤급	개	1,260,723	93%
OD300.41000	T.T.P 제작	40톤급	개	1,559,531	93%
OD300.51000	T.T.P 제작	50톤급	개	1,787,781	92%
OD300.61000	T.T.P 제작	64톤급	개	2,111,324	9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T.T.P 제작에 필요한 가설재(철재거푸집, 강관비계 등) 설치 및 해체, 콘크리트타설과 양생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전치 및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레미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D31* 소파블록 거치 또는 제거(육상수상)(난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13.0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5톤급 이하 (크레인 10톤)	개	43,202	86%
OD313.1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5톤급초과·10톤급이하 (크레인 15톤)	개	56,716	81%
OD313.2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10톤급초과·15톤급이하 (크레인 20톤)	개	72,545	78%
OD313.3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15톤급초과·20톤급이하 (크레인 25톤)	개	86,984	75%
OD313.4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20톤급초과·25톤급이하 (크레인 35톤)	개	127,959	73%
OD313.4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25톤급초과·30톤급이하 (크레인 40톤)	개	130,560	72%
OD313.5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30톤급초과·40톤급이하 (크레인 50톤)	개	160,408	67%
OD313.7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40톤급초과·55톤급이하 (크레인 70톤)	개	172,228	64%
OD313.7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55톤급초과·60톤급이하 (크레인 80톤)	개	191,041	58%
OD313.8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55톤급초과·60톤급이하 (크레인 100톤)	개	211,439	55%
OD313.9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60톤급초과·80톤급이하 (크레인 100톤)	개	215,741	55%
OD313.9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난적)	80톤급초과·120톤급이하 (크레인 150톤)	개	252,686	4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상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이 단가는 소파블록 난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단가보정】

- ① 소파블록 제거(육상수상)(난적) 단가는 거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D31*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층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14.0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5톤급 이하 (크레인 10톤)	개	50,947	86%
OD314.1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5톤급초과-10톤급이하 (크레인 15톤)	개	71,739	81%
OD314.2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10톤급초과-15톤급이하 (크레인 20톤)	개	86,839	78%
OD314.3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15톤급초과-20톤급이하 (크레인 25톤)	개	105,386	75%
OD314.4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20톤급초과-25톤급이하 (크레인 35톤)	개	157,992	73%
OD314.5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25톤급초과-30톤급이하 (크레인 40톤)	개	159,504	72%
OD314.6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30톤급초과-40톤급이하 (크레인 50톤)	개	191,376	67%
OD314.7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40톤급초과-55톤급이하 (크레인 70톤)	개	199,994	64%
OD314.8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55톤급초과-60톤급이하 (크레인 80톤)	개	226,466	58%
OD314.8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55톤급초과-60톤급이하 (크레인 100톤)	개	243,947	55%
OD314.9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60톤급초과-80톤급이하 (크레인 100톤)	개	243,947	55%
OD314.9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층적)	80톤급초과-120톤급이하 (크레인 150톤)	개	290,705	4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상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이 단가는 소파블록 층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D32* 소파블록 거치 또는 제거(육상수중)(난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23.0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5톤급 이하 (크레인 10톤, 잠수조)	개	83,253	88%
OD323.1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5톤급초과~10톤급이하 (크레인 15톤, 잠수조)	개	120,311	85%
OD323.2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10톤급초과~15톤급이하 (크레인 20톤, 잠수조)	개	122,898	83%
OD323.3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15톤급초과~20톤급이하 (크레인 25톤, 잠수조)	개	183,540	81%
OD323.4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20톤급초과~25톤급이하 (크레인 35톤, 잠수조)	개	202,025	78%
OD323.4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25톤급초과~30톤급이하 (크레인 40톤, 잠수조)	개	204,420	77%
OD323.5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30톤급초과~40톤급이하 (크레인 50톤, 잠수조)	개	282,971	76%
OD323.7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40톤급초과~55톤급이하 (크레인 70톤, 잠수조)	개	298,515	73%
OD323.7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55톤급초과~60톤급이하 (크레인 80톤, 잠수조)	개	331,447	69%
OD323.8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55톤급초과~60톤급이하 (크레인 100톤, 잠수조)	개	346,298	66%
OD323.9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60톤급초과~80톤급이하 (크레인 100톤, 잠수조)	개	351,994	66%
OD323.9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난적)	80톤급초과~120톤급이하 (크레인 150톤, 잠수조)	개	398,530	6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이 단가는 소파블록 난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단가보정】

- ① 소파블록 제거(육상수중)(난적) 단가는 거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D32*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층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24.0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5톤급 이하 (크레인 10톤, 잠수조)	개	92,338	88%
OD324.1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5톤급초과-10톤급이하 (크레인 15톤, 잠수조)	개	130,758	85%
OD324.2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10톤급초과-15톤급이하 (크레인 20톤, 잠수조)	개	158,061	83%
OD324.3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15톤급초과-20톤급이하 (크레인 25톤, 잠수조)	개	194,357	81%
OD324.4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20톤급초과-25톤급이하 (크레인 35톤, 잠수조)	개	257,067	78%
OD324.5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25톤급초과-30톤급이하 (크레인 40톤, 잠수조)	개	258,845	77%
OD324.6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30톤급초과-40톤급이하 (크레인 50톤, 잠수조)	개	351,046	76%
OD324.7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40톤급초과-55톤급이하 (크레인 70톤, 잠수조)	개	361,495	73%
OD324.8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55톤급초과-60톤급이하 (크레인 80톤, 잠수조)	개	393,768	69%
OD324.8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55톤급초과-60톤급이하 (크레인 100톤, 잠수조)	개	414,793	66%
OD324.9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60톤급초과-80톤급이하 (크레인 100톤, 잠수조)	개	414,793	66%
OD324.9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층적)	80톤급초과-120톤급이하 (크레인 150톤, 잠수조)	개	471,494	6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이 단가는 소파블록 층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D33* 소파블록 거치 또는 제거(해상수상)(난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33.0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난적)	5톤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개	58,205	86%
OD333.1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난적)	5톤급초과-1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20톤)	개	85,104	80%
OD333.2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난적)	10톤급초과-1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30톤)	개	108,269	77%
OD333.3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난적)	15톤급초과-2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40톤)	개	152,463	74%
OD333.4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난적)	20톤급초과-2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50톤)	개	182,497	73%
OD333.42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난적)	25톤급초과-3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187,209	70%
OD333.43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난적)	30톤급초과-3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214,812	70%
OD333.5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난적)	35톤급초과-4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80톤)	개	229,311	65%
OD333.6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난적)	40톤급초과-5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100톤)	개	247,473	62%
OD333.9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난적)	50톤급초과-8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150톤)	개	287,248	5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상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이 단가는 소파블록 난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단가보정】

- ① 소파블록 제거(해상수상)(난적) 단가는 거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D33*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층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34.0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층적)	5톤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개	61,900	86%
OD334.1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층적)	5톤급초과-1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20톤)	개	90,032	80%
OD334.2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층적)	10톤급초과-1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30톤)	개	130,245	77%
OD334.3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층적)	15톤급초과-2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40톤)	개	160,868	74%
OD334.4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층적)	20톤급초과-2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50톤)	개	214,029	73%
OD334.5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층적)	25톤급초과-3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223,195	70%
OD334.6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층적)	30톤급초과-3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246,166	70%
OD334.7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층적)	35톤급초과-4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80톤)	개	271,713	65%
OD334.8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층적)	40톤급초과-5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100톤)	개	291,549	62%
OD334.9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층적)	50톤급초과-8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150톤)	개	336,447	5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상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이 단가는 소파블록 층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D34* 소파블록 거치 또는 제거(해상수중)(난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43.11000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난적)	5톤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개	103,927	88%
OD343.21000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난적)	5톤급초과·1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20톤, 잠수조)	개	133,386	84%
OD343.31000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난적)	10톤급초과·1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30톤, 잠수조)	개	181,268	81%
OD343.41000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난적)	15톤급초과·2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40톤, 잠수조)	개	232,581	79%
OD343.42000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난적)	20톤급초과·2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50톤, 잠수조)	개	263,291	77%
OD343.43000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난적)	25톤급초과·3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272,549	74%
OD343.51000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난적)	30톤급초과·3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344,470	76%
OD343.61000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난적)	35톤급초과·4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80톤, 잠수조)	개	371,991	72%
OD343.71000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난적)	40톤급초과·5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100톤, 잠수조)	개	379,692	69%
OD343.91000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난적)	50톤급초과·8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150톤, 잠수조)	개	445,013	6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이 단가는 소파블록 난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단가보정】

- ① 소파블록 제거(해상수중)(난적) 단가는 거치 단가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 OD34*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층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44.0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층적)	5톤급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개	104,986	88%
OD344.1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층적)	5톤급초과~1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20톤, 잠수조)	개	152,476	84%
OD344.2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층적)	10톤급초과~1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30톤, 잠수조)	개	209,559	81%
OD344.3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층적)	15톤급초과~2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40톤, 잠수조)	개	262,117	79%
OD344.4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층적)	20톤급초과~2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50톤, 잠수조)	개	328,138	77%
OD344.5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층적)	25톤급초과~3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339,290	74%
OD344.6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층적)	30톤급초과~35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422,147	76%
OD344.7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층적)	35톤급초과~4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80톤, 잠수조)	개	453,974	72%
OD344.8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층적)	40톤급초과~5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100톤, 잠수조)	개	478,812	69%
OD344.9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층적)	50톤급초과~80톤급이하 (조합기중기선 150톤, 잠수조)	개	534,732	6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이 단가는 소파블록 층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I10* 오락방지막 대선 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0I100.11000	오락방지막대선적재	H=3~5m, 1경간=20m (크레인 10톤)	경간	63,592	8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을 대선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단, 앵커블록 제작 및 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I11* 오락방지막 조립 및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0I110.11000	오락방지막조립및설치	H=3~5m, 1경간=20m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경간	349,807	8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체의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해상장비비 및 소요 비용이 포함되며 주자재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② 단, 앵커블록 제작 및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OI12* 오락방지막 해체 및 철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0I120.11000	오락방지막해체및철거	H=3~5m, 1경간=20m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경간	278,727	8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체의 해체 및 철거에 필요한 해상장비비 및 소요 비용이 포함된다.
- ② 단, 앵커블록의 해체 및 철거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OI14* 오락방지막 유지관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0I140.11000	오락방지막유지관리	예선(119kW), 잠수조	회	1,888,997	8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체의 파손, 막체 접속부 연결상태, 계류라인 및 부체상태 이상유무 점검(정기점검, 임시점검)과 부유·부착물질 제거 및 변형상태 확인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유지관리 점검은 1일당, 55 경간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OI33* 앵커블록 대선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0I330.01000	앵커블록 대선적재	크레인 10톤	개	14,943	8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의 설치 시 필요한 앵커블록을 대선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I34* 앵커블록 거치(해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0I340.01000	앵커블록거치	수중 (조합기중기선 15톤, 잠수조)	개	172,295	8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오락방지막 설치용 앵커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G20** 고무 방충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G200.11000	고무방충재설치	각종 (크레인(트럭) 10톤)	개	265,143	8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고무방충재(V형, O형, BP형)를 설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단, 고무방충재 재료비(고무방충재, 앵커볼트 등), 작업대 설치비와 앵커 구멍 천공비, 잡철물 제작·설치비(간단), 방충재의 소운반비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③ 고무방충재를 해상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예인선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R12* 계선주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R120.11000	계선주설치	각종 (크레인(트럭) 10톤)	기	182,800	8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안벽 및 물양장 등의 계선직주 또는 곡주 설치 시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단, 계선주 재료비(앵커볼트 등), 부속공사비(도장, 콘크리트 채움 등), 잡철물 제작·설치비(간단)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OR29* 차막이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R291.01000	차막이 설치	P.E (150×150×1,000)	개	13,421	100%
OR292.01000	차막이 설치	STS (150×150×1,000)	개	70,210	99%
OR293.01000	차막이 설치	FREP (150×170×1,000)	개	68,795	8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안벽 및 물양장 등의 차막이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단, 차막이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P.E 차막이 설치 단가는 앵커매입, 볼트조이기가 포함된 인력의 비용이다.
- ④ STS 차막이 설치 단가는 콘크리트 구멍뚫기, 잡철물설치(간단), 콘크리트 타설(소형) 등이 포함된 재료비와 인력의 비용이다.
- ⑤ FREP 차막이 설치 단가는 콘크리트 치핑 및 신규접착제, 앵커볼트 설치, 모르터 포설 및 접착제 안착, 에폭시 페인트칠 등이 포함된 재료비와 인력의 비용이다.

■ OR30* 모서리보호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R300.01000	모서리 보호	STS강판(9t*100w)	m	98,934	9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안벽 및 물양장의 상치콘크리트 모서리 보호를 위한 도장, 잡철물 제작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스테인리스 강판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R60* 공사용 등부표 설치 및 철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R610.11000	공사용 등부표 설치	LS-24, LL-24, LL-26 등 (조합기중기선15톤)	기	1,481,466	87%
OR620.11000	공사용 등부표 철거	LS-24, LL-24, LL-26 등 (조합기중기선15톤)	기	1,182,241	8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 현장에 도착한 공사용 등부표 설치 및 철거(유용제외) 시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작업반장, 특별인부, 보통인부, 내선전공 등) 비용이다.
- ② 단, 등부표 제작, 운반, 측량, 용접, 기중기선의 예인 및 피예인비는 별도 계상한다.

■ OR60* 공사용 등부표 유지관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R640.11000	공사용 등부표 유지관리	예선(119kW), 잠수조	회	2,219,020	85%
OR640.12000	공사용 등부표 유지관리	예선(119kW)	회	1,592,136	8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에서 공사용 등부표 표체 체인, 계류구, 침추 등의 이상유무, 부유·부착물질 제거 및 부식·변형·균열여부, 등명기 및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유지 여부, 축전지 충전량 등을 확인 유지관리 점검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특별인부, 보통인부, 내선전공 등)의 비용이다.
- ② OR640.12000 공사용 등부표 유지관리[(예선(119kW))]의 단가는 수중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③ 등부표 등의 보수재료비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이 단가의 공사용 등부표 유지관리 단위 1회는 평수구역 내에서 1일(8hr) 2기를점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X00* 필터매트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2.32000	필터매트 부설	수상	m ²	1,029	26%
OX002.42000	필터매트 부설	수중 (잠수조)	m ²	1,561	7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필터매트 부설에 필요한 자재비(P.P로프, 모래주머니, 철근 등), 장비비 및 인력의 비용을 포함한다.
- ② 이 단가는 매트부설, 매트봉합 및 마무리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중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 ③ 매트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X00* 상치지보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3.01000	상치지보공조립및해체	L형강-65×65×6, 800×800×1,100	m	44,547	7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상치지보공 제작과 조립 및 해체에 필요한 용접봉, 산소, 아세틸렌 등의 재료비와 인력의 비용이다.
- ② 단, 형강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X00* 신축이음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4.01000	신축이음설치	합판(t=12mm)	m ²	23,993	9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신축이음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합판과 충전재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X00*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중코드	공중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6.0100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설치)	일반철재	ton	1,204,232	93%
OX006.0200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설치)	경량철재	ton	1,536,953	94%
OX006.1100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설치)	일반철재	ton	2,975,117	93%
OX006.1200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설치)	경량철재	ton	3,797,110	94%
OX006.2100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ton	5,161,125	93%
OX006.2200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설치)	경량철재	ton	6,584,046	9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콘크리트블록 및 케이슨공사, 계선주, 모서리보호, 방충재, 차막이 등의 공사를 할 때 잡철물의 제품설치, 규격철물설치, 현장제작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철공, 용접공, 보통인부, 특별인부)와 경비 및 재료비(기계경비 및 잡재료비)가 포함된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블록 및 케이슨공사, 계선주, 모서리보호, 방충재, 차막이 등의 주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제품설치는 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고 규격철물 설치는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안전난간 등)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며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④ 주문제작 대형철물(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특수철물(조형물 등)의 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노무비의 비율로 다음을 적용한다.

구분	일반철재	경량철재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5%	4%
잡재료비	3%	2%

- ⑦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노무비의 10%를 감한다.
- ⑧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노무비의 30%를 가산한다.
- ⑨ 경량철재는 스테인리스 등을 말한다.

■ OX00* 토사 및 기초잡석 다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7.01000	다짐	래머(80kg)	m ³	6,872	9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토사, 기초잡석 등을 다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OX0** 녹막이페인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9.01000	녹막이페인트칠	철재면, 2회 붓칠	m ²	6,778	9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계선주 및 차막이 설치, 강재 거푸집 제작에 필요한 녹막이페인트 칠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 ② 페인트, 시너 등의 재료비 또는 바탕만들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OX0** 조합페인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10.01000	조합페인트칠	철재면, 2회 붓칠	m ²	9,120	9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계선주 및 차막이 설치, 강재 거푸집 제작에 필요한 조합페인트 칠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 ② 페인트, 시너 등의 재료비 또는 바탕만들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OX0** 줄눈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11.01000	줄눈 설치		m	1,010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줄눈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이 단가는 시공량 700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줄눈재, 백업재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참고자료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시공사가 도급금액에 반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규모 ²⁾	공사종류 ³⁾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¹⁾	비고 ²⁾
5억 미만	일반건설(갑)	2.65	90.5%
	일반건설(을)	2.80	90.5%
	특수및기타	1.61	87.2%
	철도궤도	2.24	91.6%
	중건설	3.13	91.4%
5억~50억 미만	일반건설(갑)	1.70	91.3%
	일반건설(을)	1.82	91.3%
	특수및기타	1.06	88.0%
	철도궤도	1.45	92.4%
	중건설	2.17	92.1%
50억 이상	일반건설(갑)	1.87	94.8%
	일반건설(을)	1.99	94.8%
	특수및기타	1.16	91.5%
	철도궤도	1.59	95.9%
	중건설	2.33	95.6%
추정금액 800억원 이상 ²⁻¹⁾ (단,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일반건설(갑)	2.04	94.8%
	일반건설(을)	2.17	94.8%
	특수및기타	1.26	91.5%
	철도궤도	1.74	95.9%
	중건설	2.54	95.6%

- 1) 본 산업안전관리비율은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와 관급자재비의 합계금액에 적용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정액가산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2) 공사규모는 “직접공사비[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에 비고에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추정금액 800억원 이상, 다만 주공정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의 경우, 공사의 규모는 추정금액에 비교에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공사종류(건설업)의 분류,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를 따른다.
- ※ 본 자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 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
- ※ 본 자료는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하며,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계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경비율

공사규모 ²⁾	공사기간	기타경비율 ¹⁾				
		토목	건축	산업설비 (토목)	산업설비 (건축)	조경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8.0	7.4	8.3	7.5	7.7
	7~12개월 (365일)	8.7	8.1	8.9	7.4	7.6
	12~36개월 (1095일)	9.2	8.5	9.5	8.0	8.1
	36개월이상 (1096일)	9.9	9.1	10.0	7.5	7.6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8.7	7.8	8.9	7.6	7.6
	7~12개월 (365일)	8.7	8.0	9.0	7.4	7.5
	12~36개월 (1095일)	10.3	9.6	10.5	7.9	7.9
	36개월이상 (1096일)	10.7	10.2	11.2	7.4	7.5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8.3	7.6	8.6	7.4	7.5
	7~12개월 (365일)	8.4	7.8	8.6	7.2	7.3
	12~36개월 (1095일)	10.1	9.4	10.2	7.7	7.7
	36개월이상 (1096일)	10.7	9.9	10.8	7.3	7.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6.5	5.7	6.6	7.5	7.6
	7~12개월 (365일)	6.7	5.9	6.7	7.4	7.4
	12~36개월 (1095일)	8.9	8.2	9.1	7.8	8.0
	36개월이상 (1096일)	9.6	8.8	9.7	7.5	7.5

- 1) 본 기타경비율은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에 적용한다.
- 2) 공사규모는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 3)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의 정의는 조달청의 기준을 따른다.

※ 본 자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

□ 이윤율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윤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41조 참조)

참 고 자 료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해양수산부훈령 제671호)..... 1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4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시행 2022.9.28] [해양수산부훈령 제671호, 2022.9.2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부문의 표준시장단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한국항만협회를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해석 및 보급 등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게을리 하거나 공신력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운영재원) 표준시장단가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항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위탁재원으로 충당한다.

제5조(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6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31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마련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하면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공고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하고, 표준시장단가 관련 정부, 학계·연구기관, 발주기관, 항만공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과 관리기관의 항만기술기준센터장 1명으로 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관련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심의위원회 및 종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9조(항만공사비지수) 관리기관의 장은 항만공사비지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9조에 따라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 및 제90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물가보정을 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과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를 활용한다.

제10조(관리기관의 세부지침)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시장 단가 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671호, 2022. 9.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3. 06.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2023. 06. 1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5. 9. 2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외에는 총계방식(이하 "1식단가"라 한다)으로 특정공종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며,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0. 6. 1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거래 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개정 2015. 9. 21.>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 9. 21.>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

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 9. 21.>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 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 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 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신설 2019. 12. 18.>

22.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23.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24. 안전관리비는 제조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1. 12. 1.>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장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 2021. 12. 1.>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

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개정 2015. 9. 21.>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개정 2015. 9. 21.>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

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5. 1. 1.>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신설 2019. 12. 18.>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300억원 미만	5.5	5억~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개정 2011. 5. 13., 2015. 9. 21.>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무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18. 12. 31.>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4. 15. 2016. 12. 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

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15. 9. 21.>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2017. 12. 28.>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 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신설 2017. 12.

28.><개정 2018. 12. 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신설 2017. 12.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신설 2023. 6. 30.>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개정 2018. 12. 31.>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신설 2018. 12. 31.>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신설 2018. 12. 31.>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신설 2018. 12. 31.>

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5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④ 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18. 12. 31.>

제31조의2(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0. 4. 15.>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

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 4. 15. 개정 2015. 9. 2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4. 15.>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가계산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4. 15.>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4. 15. 개정 2010. 10. 22. 2016. 12.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정관(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 규정)
2. 삭제 <2020. 12. 28.>
3. 설립허가서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의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7절 보칙

제33조(특례설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 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6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①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

계약으로 한다.<개정 2015. 3. 1.>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 1.>

제38조(직접공사비) ①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직접공사비를 공종별로 직접조사·집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간접공사비) 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 ③ 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 ④ 제38조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 제40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300억원 미만	5.5	5억~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개정 2011. 5. 13., 2015. 9. 21.>

제4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윤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

제44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44조의2(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방식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을 말하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말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pm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④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세부기준·절차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으로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44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46조(등록자격요건)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제48조(등록증의 교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8의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9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 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제46조의 등록요건과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별표 9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 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2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3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653호, 2023. 6. 1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 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 "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 "시장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 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생산자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시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 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 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포함 여부 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판매방법"이라 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량"이라 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유통성·장래성 및 다른 상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시방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이하 "생산자 구분품목"이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표 10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조(조사처) ①조사처는 제5조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해당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표 11 및 별표 12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①조사대상도시는 인구·산업·교육문화·행정·도로교통사정·자연지리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및 제주지역으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가격조사는 제4조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자재의 품귀, 2중가격 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요원 등) ①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조사요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의한 조사지역별 각 1인이상을 포함한다.

③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여야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⑤제2항에 의한 조사요원 외에 제47조제4호에 의한 자가 그 직무분야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 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조사처 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규격: 단위: 제조기간: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0%]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개정 2011.5.13.>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14
	50~300억원 미만	15
	300억원 이상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17%+ 14.5%)/3 = 15.5%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1)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연구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7,850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0년 0.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표 6)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직접공사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계				

(별표 7)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④법인설립허가관청	
<p>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기획재정부장관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재직증명서 1부. 4. 품셈분야별 기술자재직증명서 1부.

22451-01511일

'93.5.18 승인

201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표 8)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년 월 일)

1. 법 인 명 :

2. 대표자성명 :

3. 주 소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22451-01611일
'93.5.18 승인

201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표 10) 조사상품기본조사표

① 상품명		② 통상명칭		③ 코드번호		④ 수품검위 품명	
상 품 내 용				생 산 자 별 계 급 구 분			
⑤ 주요용도	① 공인규격 유무(종류)	② 품질·규격		단 위 품 목 수		③ 생산자별 구분여부	
	② 공인형식 또는성능			④ 규격품목과 유형품목수		⑤ 생산인원수	
	③ 규격범위별 수품비중			⑥ 규격품목과 지역비중		⑦ 조사대상 생산지별	
⑥ 상품특성				⑧ 기타특단사항			

조사가격의종류				이 수급사정(수량 또는 금액)				2. 원가구성비율(구성비:%)					
조사방법	연도별	년	년	년	년	년	년	연도별	요소비율	년	년	년	년
① 가격성격								① 연간능력	① -1				
② 조사지역								② 국 산	② -1				
③ 조사단계								③ 수 입	③ -1				
④ 단위거래량치 구분여부								④ 연간능력	④ -1				
								⑤ 내 수	⑤ -1				
								⑥ 수 출	⑥ -1				
								⑦ 지 결 성	⑦ -1				
								⑧ 관 련 단 계					
								단 제 성 격	⑧ -1				
								단 제 성 격 (가산)명	⑧ -1				
								상 류 별 단 계	⑧ -1				
								연 구 단 계	⑧ -1				
								정 부 기 관	⑧ -1				
								장 고 사 항	⑧ -1				
								단 제 성 격 (가산)명	⑧ -1				
								상 류 별 단 계	⑧ -1				
								연 구 단 계	⑧ -1				
								정 부 기 관	⑧ -1				

※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 (별표 10 서식)

- (1)상품학상의 상품명으로서 공인된 정식명칭
- (2)공식명칭이외에 시중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칭
- (3)코오드번호 부여 후에 기입
- (4)수록단위품종 편성 후에 기입
- (5)용도를 기입하되, 용도가 다양할 시에는 용도비중 60%내의 그용도
- (6)성분35%이상시는 ①, 성분 35%미만시는 60%내중 다성분②
- (7)상품의 외관상의 형태, 형상
- (8)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인된 KS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개정 2018.12.31.>
- (9)형식승인된 공인된 시험성능
- (10)규격품과 비규격품의 유통비중
- (11)단위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의 종류
- (12)규격상에 있는 총 품목수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목수
- (13)단위품목중 시중거래비중이 가장높은 품목과 그거래비중
- (14)품질, 규격, 형식, 성능 등에서 생산자간의 차이로 구분취급의 필요성 유무
- (15)총생산자수
- (16)총생산자중 그 생산량이 상위 60%이내에 드는 생산자수
- (17)상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기초단위
- (18)상품의 포장단위와 포장단위의 수량
- (19)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단위
- (20)가격이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 생산자공표, 행정지도로 구분
- (21)조사대상도시수에 따라 서울(전국), 2대도시, 5대도시, 9대도시등
- (22)유통단계 중 조사대상 단계를 표시하되, 필요시에는 2개단계도 표시
- (23)동일조사단계에서도 단위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여부 표시
- (24)국산과 수입을 합한 연간공급능력을 합산표시
- (25) ~ (26) 생략
- (27)내수와 수출을 합한 연간수요능력을 합산표시

- (28) ~ (29) 생략
- (30)상품수급에 있어서 계절적인변화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간을 표시
- (31)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2)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3)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4)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이외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 (35)조사상품에 관계가 있는 단체등에서 자문을 구할 기관
- (36)조사상품에 관해 업계, 학계의 전문가중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

(별표 11) 조사처 대장

1. 업체개요

상 호	대 표 자	형 태
소 재 지	창 립 년 월 일	취 급 종 목
소 속 업 종 별 단 체	경 쟁 업 체 수	

2. 면접담당자

위 축 년 월 일	성 명	부서, 직위	전 화

